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안

의 안	3 - 214
번 호	

제출연월일: 2000.5.

제 출 자 : 동두천시장

1. 제안이유

-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및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가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 및 기금운영조례로 변경되고 조합의 명칭도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을 “1급 내지 7급”으로 함(안 제2조).
- 나.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을 “경기도신용보증재단”으로, “경기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를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 및 기금운영조례”로 변경함(안 제20조).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6급”을 “7급”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경기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를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영조례”로 하며,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을 “경기도신용보증재단”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대조표

현행	개정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는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 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한 1대(당해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③ (생략)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7급-----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경기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u>경기도신용보증조합</u>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장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u>경기도신용보증조합</u>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0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영조례-----<u>경기도신용보증재단</u>----- ----- ----- ----- ----- -----<u>경기도신용보증재단</u>-----.